

제 997 호
1983.12.13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남길 100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25-7661-9
전화 : 72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1822 호 :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 3

◎ 고 시

제 666 호 : 사당 4동 어린이공원 조성 계획 결정 및 지적 승인 4

제 667 호 : 도시계획 용도지구 (고도지구, 주차장 정비지구) 지적 승인 6

제 668 호 : 청진구역 제 1 지구 재개발 사업 관리 처분 계획 인가 6

제 669 호 : 마포로 5구역 제 9-2 지구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11

제 670 호 : 울지로 2가구역 제 10 지구 지번 및 면적 정정 고시 14

제 671 호 : 도시계획 사업 (하수도 및 도로) 실시 계획 인가 15

< 이 면 제 속 >

공 란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표는 공무원으로서의 호의를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672 호 : 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 및 시장) 변경결정고시	16
제 673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	17

공 고

제 684 호 : 주택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	17
제 685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	18
제 686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	19
제 687 호 :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	20
제 688 호 :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	21
제 689 호 : 도시계획사업 (하천) 실시계획공람공고	21
제 690 호 : 도시계획안공고	25
제 691 호 : 도시공원시설 (정구장) 관리위탁공고	25
제 693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공람공고	25
제 694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변경시행공람공고	26
제 695 호 : 투기과열지구 지정공고	27

사 령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3년 12월 13일

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822 호

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○ 별표 "내무국" 중 "4항"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국 별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입기관
내 무 국	4. 새마을유아원 설립, 폐지 및 인가	유아교육진흥법 제 9 조 및 동시행령 제 6 조	구청장

○ 별표 "산업경제국" 중 "10-12항"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"10-33항"을 "13-36항"으로 한다.

국 별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입기관
산 업 경 제 국	10. 석유판매업 (판매소) 신고	석유사업법 제 12 조 및 동시행령 제 9 조 동시행규칙 제 9 조	구청장
	11. 석유판매업 (주유소) 승계신고	석유사업법 제 12 조 제 4 항 및 동시행규칙 제 8 조 제 5 항	구청장
	12. 석유판매업 (주유소) 휴지, 폐지, 재개 신고	석유사업법 제 14 조 및 동시행규칙 제 10 조	구청장

○. 별표 "교통국" 중 제 3 항 "정비관리자의 해임명령"의 수임기관을 "자동차 관리소장"		에서 "구청장"으로 하고 "6-10항"을 아래와 같 이 신설한다.	
국·별	사 무 장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교 통 국	6. 일반구역 화물 가. 법인의 합병해산 이행신고 나. 임원 또는 정관변경신고 다. 개선명령 이행신고	○.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 30조 제 1항 ○. " 제 30조 제 5항 ○.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5조 및 동시행규칙 제 30조 제 1항 제 3호	구 청 장
	1. 택시조합 가. 임원 또는 정관 변경 신고	○.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 30조 제 5항	"
	8. 전세버스 가. 개선명령 이행신고	○.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 30조 제 1항 3호	"
	9. 전세 장의자동차 가. 사업계획의 변경이행 신고(대, 폐차, 주 사무소)	○.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 30조 제 1항	자 동 차 관 리 사 업 소 장
	10. 주차용 도로 점용 허가	○.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 14 조	구 청 장
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			
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 margin-bottom: 10px;"> 고 시 </div> ◎서울특별시고시제 666 호 사당 4동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		4.16)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사당 4동 어린이대공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 계획을 결정 및 지 적승인하였기 도시공원법 제 4 조와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등 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- 공원과의	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9 호(82.			

<p>관할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3.12.13. 서울특별시장</p>	<p>가.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(별첨)</p> <p>나. 관계도면 (도면생략)</p>
--	---

2. 공원조성계획 총괄표

시설구분	제부시설내용	부지면적	비고
유희시설	그네 미끄럼틀 구름다리	400	
운동시설	철봉	100	
휴양시설	벤취, 탁자	100	
도로	산책로	1,200	
공원관리시설	벤스 석축	200	
조경시설	기존수림	7,000	
계		9,000	㎡

3. 시설조서

일련번호	시설명	위치	부지면적	건축면적		구분	비고
				바닥면적	연면적		
1	그네	사당동산 32-53 외 2필	160			사	사 양
2	미끄럼틀	"	120			"	"
3	구름다리	"	120			"	"
4	의자	"	60			H=1.8m	
5	철봉	사당동산 32-53	100			사	사 양
6	벤스	사당동산 32-53 외 1필	100			H=1.5m	
7	석축	"	100			H=1~3m	
8	산책로	사당동산 32-53 외 3필	1,200			폭 2m	
9	탁자	사당동 32-53	40			φ 1.5m	
10	조경시설 (기존수림)	사당동산 32-53 외 3필	7,000				
계			9,000			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67 호

도시계획용도지구 (고도지구, 주차장
정비지구) 지적승인

1. 당시 도시계획구역내 서울특별시
고시 제 164 호 (82.4.22) 로 도시계
획 용도지구 (고도지구, 주차장정비
지구) 결정된 지역을 도시계획법 제
13 조와 동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
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
와 중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
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에게 보인다.

1983.12.13.
서울특별시장

가. 용도지구 지적승인 조서

지 구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최고고도지구	중구 신당동 일대	32,322	성곽높이 이하
주차장정비지구	중구 전역	10,176,000	

* 별표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1983.12.13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68 호

청진구역 제 1 지구 재개발사업
관리처분 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442 호 (81.
12.21) 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
청진구역제 1 지구의 재개발사업에 대
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동
법시행령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
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였기 다음과
같이 고시 한다.

가. 사업의 명칭 : 청진지역제 1 지구재개발사업
나. 시행구역 : 서울특별시 중로구 공평동
100번지의 27필지
다. 시행면적 : 11,191.7 ㎡
라. 시행자 주소, 성명
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53-1
주식회사 제일은행 은행장 이 필 선
마. 시행기간 : 81.12.21-86.12.31
바.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대
차 및 건축시설
1) 대 지 : 3필지 9,487.3 ㎡
2) 건축시설 : 1 동 72,000 ㎡
층수 : 지하 4 층, 지상 18 층
용도 : 업무시설

<p>사. 분양대상자의 주소, 성명 : 해당 없음.</p> <p>아.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명세와 가격 : 별첨</p> <p>자.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: 해당없음</p> <p>차.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</p>	<p>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: 별첨</p> <p>카. 보류지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: 해당없음.</p> <p>타.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</p> <p>가)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</p>
---	---

(단위 : 원)

소유	지번	부자비			비율 %	토지공유분		건축물공유권적			건축물실유권적		건축물합계		
		대지 (평가액)	건축비	비		면적	금액	면적	단가	금액	분양중	면적	금액	면적	금액
주식회사 제일은행	광평동 100	22,087,020	4,950,000	71,587,020		분양신청자가 없으므로 신청자 단독 시행									

부소 평가금액	청 산 방 법
평 균 금 액	
147,806,000	도시 재개발법제 44 조, 제 53 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의 공인합동평가사무소 평가금액 (83.7.27 자) 의 평균가액으로 하여 관리 처분기확인 기일로부터 15일내에 정산키로 한다. 단 토지등의 소유자가 청산금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특별히 정한것 이외에는 동법제 38 조 2 항, 제 39 조, 제 65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, 도시계획법, 도시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키로 함.
382,533,500	
204,351,000	
178,182,500	
912,873,000	

부소 평가금액	청 산 방 법
평 균 총 액	
16,522,800	상 용
258,000 (면 실)	
16,533,840	
73,863,550	
1,102,280	
534,230	
11,403,300	
324,820	
100,542,820	

차.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증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

1)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증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

가. 토 지

순번	소재지	지목	면적 (㎡)	소유자	동양감정 평가사무소		경일감정 평가사무소		평균가액	
					단가(㎡)	평가금액	단가(㎡)	평가금액	단가(㎡)	평가금액
1	종로구공평동 152	대지	112.4	고광선	1,360,000	152,864,000	1,270,000	142,748,000	1,315,000	147,806,000
2	" 153	"	181.8	최다복	1,360,000	395,624,000	1,270,000	369,443,000	1,315,000	382,533,500
3	" 154	"	109.1							
4	" 156	"	155.4		김연복	1,360,000	211,344,000	1,270,000	197,358,000	1,315,000
5	" 157	"	135.5	조중민	1,360,000	184,280,000	1,270,000	172,085,000	1,315,000	178,182,500
합 계			694.2 (210평)			944,112,000		881,634,000		912,873,000

나. 건 물

순번	소재지	용도	구조	층별	면적 (㎡)	소유자	동양감정 평가사무소		경일감정 평가사무소		평균가액	
							단가	평가금액	단가	평가금액	단가	평가금액
1	종로구공평동 152	영업소 물치	연와조와즙	1	28.1	고광선	300,000	16,860,000	288,000	16,185,600	294,000	16,522,800
				2	28.1		138,000	276,000	120,000	240,000	129,000	258,000
				지하부	1.5			(별실)		(별실)		
2	" 153	"	목조와즙	1	26	최다복	416,000	17,097,600	388,000	15,970,080	401,696	16,337,840
3	" 154	"	"	1	15.16	"			492,000	70,921,800	512,107	73,863,550
4	" 156	영업소 및여관	철근콘크리트 연와조평우세	1	42.25	김연복	533,000	76,805,300	492,000	70,921,800	512,107	73,863,550
				2	42.25							
				3	32.79							
				4	26.86							
			지하	5.62		205,000	1,148,000	188,000	1,056,360	196,135	1,102,280	
			유	2.01		287,000	574,000	246,000	494,460	265,786	534,220	
			탑			233,000	11,673,300	222,000	11,133,300	227,383	11,403,300	
5	" 157	영업소 물치	목조와즙 연와조	1	27.63	조중민	187,000	336,600	172,000	313,040	173,472	324,820
				2	22.52							
				지하부	1.82							
합 계				304.61		411,000	124,770,800	333,000	116,341,940	335,723	120,542,820	

2) 청산 방법
가. 토지

순번	소재지	지목	면적 (㎡)	소유자	감정합동 평가사무소 평가금액		청산 방법
					평균단가 (㎡)	평균금액	
1	종로구 공평동 152	대지	112.4	고광선	1,315,000	147,806,000	도시 재개발법제 44조,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의 공인합동평가사무소 평가금액 (83.7.27자)의 평균가액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인 기일로부터 15일내에 정산키로 한다. 단 토지등의 소유자가 청산금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특별히 정한것 이외에는 동법제 38조 2항, 제 39조, 제 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, 도시계획법, 도시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키로 함.
2	" 153	"	181.8	최다부	1,315,000	382,533,500	
3	" 154	"	109.1	"			
4	" 156	"	155.4	김연목	1,315,000	204,351,000	
5	" 157	"	135.5	조충민	1,315,000	178,182,500	
합계			692.2(210평)			912,873,000	

나. 건물

순번	소재지	용도	구조	층별	면적(㎡)	소유자	감정합동 평가사무소 평가금액		청산 방법
							평균단가	평균총액	
1	종로구 공평동 152	영업소 물치	연와조 와즙	1	28.1	고광선	294,000	16,522,800	상 동
				2	28.1				
				지하 부속	2 1.5				
2	" 153	"	목조와즙	1	26	최다부	401,696	16,533,840	
3	" 154	"	"	1	15.16				
4	" 156	영업소 및 여관	철근콘크 리트연와 조병우제	1	42.25	김연목	512,407	73,863,550	
				2	42.25				
				3	32.79				
				4	26.86				
				지하 옥탑	5.62 2.01				196,135
5	" 157	영업소 물치	목조와즙 연와조	1	27.63	조충민	227,383	11,403,300	
				2	22.52				
				부속	1.82				178,472
합계					304.61		395,723	100,542,820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69 호

마포로 5 구역 제 9-2 지구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

1. 건설부고시 제 345 호 (79.9.21)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412 호 (81.11.13) 및 동고시 제 92 호 (83.2.17) 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마포로 5 구역 제 9-2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하고 동법 제 16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.

1983. 12. 14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의 명칭 : 마포로 5 구역 제 9-2 지구 재개발사업

나. 시행위치 :

중구 순화동 6-10, 6-3, 6-23, 6-28, 6-29, 6-41, 5-2, 서대문구 충정로 3 가 227-3, 227-4, 227-5, 227-6, 227-8, 250-7, 250-5, 3, 서대문구 미군동 320

다. 시행면적 : 5,028.8 ㎡

○ 대지면적 : 4,232.5 ㎡

○ 공공용지 부담면적 :

795.3 ㎡

라. 건축계획 (규모 및 층별용도는 건축허가로 확정)

○ 건축면적 : 1,299 ㎡

○ 건 폐 율 : 31 %

○ 연 면 적 : 29,442 ㎡

○ 용 적 율 : 568 %

○ 층 수 : 지상 17 층, 지하 3 층

○ 주 용 도 : 업무시설

마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성동구 행당동 17

바. 시행기간 : 83.12 - 85.12.31

사.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
: 중구 신당동 340 - 29

김 연 순
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

축물의 경시 및 소유권 이외의

권리명세 : 별첨

9) 가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							
번호	소재지	사용또는수용할토지	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	
		지목	지적(㎡)	성명	주소	근저당권자	주소
1	순화동 6-3	대	588.1	김연준	중구신당동 340-29		
2	6-10	대	2,208.8	한양학원	성동구행당동 17		
3	6-23	대	9.3	"	"		
4	6-28	대	89.1	"	"		
5	6-29	대	5.6	"	"		
6	6-41	대	61	김창환	성동구군자동 1-17		
7	5-2	대	1,270.6	백경순	중구신당동 340-29		
8	충정3가 227-3	대	88.9	국유지			
9	227-4	대	55.9	"			
10	227-5	대	74.4	"			
11	227-5	대	179.2	김연준	중구신당동 340-29		
12	227-8	대	62.5	"			
13	250-7	대	58	이성행	충정3가 250-7		
14	250-53	대	53.9	"			
15	비근동 320	대	223.5	김운용	침파동 1-45	국민은행	남대문 3가 9-1
	계		5,028.8				

나)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

번호	소재지	건축물현황			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	
		용도	구조	면적(㎡)	층별	성명	주소	근저당	주소
1	순화동 6-10	본관 주채 창고 보일러실 숙소 물치	연와조와습	216.53	단층	한양학원	성동구행당동17		
			복조와습	267.11	"	"	"		
			"	63.64	"	"	"		
			"	59.17	"	"	"		
2	순화동 5-2	주채	복조와습	162.02	"	백경순	신당동 340-29		
			"	42.98	"	김연순	"		
3	충정3가 227-6	주채	세멘부복조습	21.85	"	"	"		
			세멘와습	21.19	"	"	"		
			"	19.01	"	"	"		
4	227-8	주채	복조세멘와습	36.73	"	"	"		
5	250-7	주채	복조와습	70.58	1층	이성행	충정3가250-7		
			"	44.10	2층	"	"		
6	미군동 320	영업	철근콘크리트	188.76	1층	김운용	김피동1-45	국민은행	남대문2가 9-1
			빙옥개	189.62	2층	"	"		
			"	126.31	지아1층	"	"		
계				1,549.1					

제997호

시

본

1983.12.13

29-13

749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70 호

을지로 2 가구역 제 10 지구
지번 및 면적정정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77.6.29)로
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
시 제 410 호 (81.1.1.10)로 사업제
가. 변경 내용
o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명세

확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
고시 제 332 호 (79.7.24) 호로 사
업시행인가된 을지로 3 가구역 제 10
지구내의 지번 및 면적변경이 있
어 이를 정정 고시한다.

1983.12.15
서울특별시 장

(단위 : m²)

변 경 전					변 경 후				
소재지	지번	지목	지 적	소유자	소재지	지번	지목	지 적	소유자
을지로 2가	3-1	대지	735.2	내외총업	을지로2가	3-1	대지	735.2	내외총업
	3-2	"	13.2	"	"	3-2	"	13.2	"
"	4-2	"	30.1	"	"	4-2	"	30.1	"
"	8	"	264.5	"	"	8	"	264.5	"
"	9-1	"	1 482.6	"	"	9-1	"	482.6	"
"	9-2	"	9.9	"	"	9-2	"	9.9	"
"	9-3	"	2.9	동국제강	"	9-3	"	2.9	"
"	9-4	"	11.5	"	"	9-4	"	11.5	"
수 하 동	50	"	4.3	"	수 하 동	50	"	4.3	"
"	64	"	112.4	개성상회	"	64	"	112.4	"
"	65-3	"	150.4	황 회 주	"	65-3	"	150.4	황 회 주
"	65-4	"	12.5	"	"	65-4	"	12.5	"
을지로 2가	5-1	"	569.9	동원산업	을지로2가	5-1	"	569.9	동원산업
"	6	"	221.5	"	"	6	"	221.5	"
남대문로1가	26-1	"	52.2	"	남대문로1가	26-1	"	52.2	"
"	25-1	"	175.2	김 명 회	"	25-1	"	175.2	김 명 회
"	27-1	"	65.8	김 영 배	"	27-1	"	65.8	김 영 배

변 경 전					변 경 후				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
남대문로1가	28-1	대지	9.2	정만표	남대문로1가	28-1	대지	9.2	정만표
"	25-2	도로	16.5	국유	"	25-3	도로	27.4	국유
을지로2가	1-3	"	39.2	서울시	을지로2가	1-2	"	39.2	서울시
"	무지번	"	5.3	"	"	6-1	"	4.3	국유
수하동	63-2	"	3.7	"	수하동	63-3	"	3.7	서울시
"	64-1	"	81.4	"	"	64-1	"	81.4	"
남대문로1가	48-4	"	7.2	"	남대문로1가	48-4	"	7.2	"
"	75-1	"	41.9	"	"	75-1	"	41.9	"
계	26필지	"	4,287.1		계	26필지	"	4,297	

○ 면적정정

구분	변경전	변경후	비고
시행면적	4,287.1	4,297	(증) 9.9
대지면적	3,999.4	4,009.3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71 호

도시계획사업(하수도 및 도로)
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654 호 (83.11.28) 로 공람공고한 바 있는 도시계획사업(하수도 및 도로)에 대하여
- 다음 -

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6 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을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3.12.16

서울특별시장

사업시행지	사업종류와명칭	사업의규모	사업시행자	사업착수일	비고
신대방 2 동 406 -2-360-21간	신대방 2 동 409- 312 간 포장공사	도로포장: 폭 8m 연장 94m 하수도매설 D=800mm L=91.6m	서울특별시청 (동작구청장)	인가일 - 1983. 2.28	

1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: 별첨
 2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
 수용법 제 4 조 3항의 관계인 주소, 성명: 별첨

토 지 조 서

(신대방 2 동 409-312 간 포장공사)

일련 번호	소재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 적 (㎡)	실제이 용상황	소유자 주소 성명		소유권이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
						관 계 인 주소 성명		
1	신대방동 361-67	대	15	15	도 로	신대방동 358-11	신 양 균	
2	361-70	"	300	300	주차장	" 361-2	대 방 기 업 주 식 회 사	
3	361-69	"	18	18	공 지	" "	대 방 기 업 주 식 회 사	
4	361-48	답	585	149	고 물 적 환 장	영등포구당산동 5 가 11- 1 강남맨손 9 동 502 호 서울특별시 국	김 공 관 악 구 청 강 등 세 무 서	채 남 처 분 압 류 (79.10. 19), 압류 (83.11.18)
5	361-55	대	442	37	"	상도동 301-2 국	이 덕 재 남 부 세 무 서	채 남 처 분 (77.2.14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72 호

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및시장)
 변경결정고시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(공용의 청
 사, 시장)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
 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
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

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 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
 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
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
 다.

1983. 12. 16.

서 울 특 별 시 장

○ 변경결정조서				
구분	시 설 명	위 치	규 모 (㎡)	비 고
기 정	공 용 의 청 사	동작구대방동 396-23	237	
변 경	"	"	0	제 지
기 정	시 장	동작구상도동 213-1	2,992	
변 경	"	"	3,192	증 200 ㎡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73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로계획시설 (도로) 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시행령 제 7 조의 2 및 동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

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3. 12. 17.

서울특별시장

○ 시설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시 점	종 점	비 고
기 정	소로	3	6 m	230 m	수색동 205	수색동 136 의 43	
변 경	"	"	"	"	"	"	위치변경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84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공람공고

1. 서고시 제 91 호 ('77.4.1) 및 서고
2. 상기구역내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

시 제 278 호 ('82.7.21) 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중림구역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, 제 42 조 규정과 동법 제 8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 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며,

(이해관계인)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동 공람공고로 가름할 것이며, 관계도서는 관할구청(주택과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3. 동구역은 공고일로부터 추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까지 본 계획에 의한 토지사용수입(건축, 매매등)은 제한합니다.

가. 공고 내용

- 사업명칭 :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 공람공고
- 시행자 : 서울특별시
- 위치 : 종정구역 (중구 중림동 637 번지일대) 제 1 지구
- 면적 : 17,594.4 평방미터
-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30 일간
- 관리처분 계획 내역 : 별도 개별 통보문 참조
- 건축 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도면 : 관할구청 (주택과)에 비치공람.

1983. 12. 13.
서울특별시

◎ 서울특별시공고 685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 호 ('82. 2.8) 및 제 119 호 ('82.3.22) 로 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동대

문구 면목동 583-119 호의 5필지의 면남국민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 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 2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 한다.

2. 토지 (건물)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3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가. 공람장소 : 동대문구청 토목과및 건설관리과

나. 공람기간 : '83.12.15-'83.12. 28. (14 일간)

1983. 12. 15.
서울특별시

공 랑 개 요

1. 사업시행지 : 동대문구 면목동 583 -119, 583-120, 1101-4, 1102-1, (산) 67-5, 1326-88
2. 사업종류 및 명칭 : 면남국민학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
3. 사업규모 : 도로개설면적 : 1,105㎡ (폭 6 m, 연장 150 m)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인가일로부터 '84.2.29 까지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 조서

7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 의 규정에 의한 관제인주소성명: 별첨
(별첨 1호서식) 토 지 조 서

일련 번호	소재지 지번	지목	지적 (㎡)	면적 (㎡)	실제이 용상황	소유자주소성명		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
						관제인주소성명		
1	면목동 583-119	전	625	625	도 로	총로구신문로 2가 1-209	김효신	
2	583-120	"	30	30	"	"	"	
3	1101-4	도로	5	5	"	면목 626-19	김영자	
						" 622-22	정도원	
4	1102-1	전	222	222	"	면목 527-94	임영석	
						" 618-2	여규홍	
5	산 67-5	임야	69	69	"	신문로 2가 1-209	김효신	
6	1326-88	구거	154	154	구 거		국	미등기
계			1,105	1,105			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86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70 호 (77.3.14) 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동대문구 망우동 (산) 18-5 외 6 필지의 중앙선 망우~동교간 양기 6부근 송곡 (송곡역중입구) 입체교차 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 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 2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한다.

2. 토지 (건물)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3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일다.

가. 공람장소: 동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

나. 공람기간: '83.12.13-'83.12.28 (14일간)

1983. 12. 13.
서울특별시 공

공 랐 거 요

1. 사업시행지: 동대문구 망우동 (산) 18-5, 212-8, 245-3, 249-1, 250-6, 252-5, 252-6

2. 사업종류 및 명칭: 중앙선망우~동교간양기 6부근 송곡 (송곡역중입구) 입체교차 시설공사

3. 사업규모: 면적 682㎡ (폭 12m, 연장 40m)
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
 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인가일
 - '84. 4.30

6.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: 별첨조서
 7. 토지수용자의 토지수용법 제 4조3항
 의 규정에 의한 관제인 주소성명 : 별첨

토 지 조 서

일련 번호	소재지번호	지 목	지적 (㎡)	평면적 (㎡)	실제이용 상 황	소유자 주소성명		비고
						관제인 주소성명		
1	망우동산 18-5	임 야	23	23	전	망우동 304	정 관 섭	
2	" 212-8	답	201	201	답	전농동 648-45 용우동 39-24 면목동 91-1	송 순 국 유 수 열 신 복 남	
3	" 245-3	전	94	94	전	망우동 250-4	이 택 영	
4	" 249-1	"	13	13	"	"	"	
5	" 250-6	대	30	30	대	"	박 국 선	
6	" 252-5	학 교 용 지	319	319	학교용지	망우동 252-1	학교법인 송곡학원	
7	" 252-6	"	2	2	"	"	"	
계			682				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87 호

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행정처분

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36 조의 규
 정에 의거 아래 특정열 사용기자재

시공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
 기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의 규정
 에 의하여 공고합니다.

1983.12.13
 서울특별시장

지정번호	업 소 명	소 재 지	대 표 자	사 유	조 치 내 용
성북 제 1 호	세훈기업사	서울시성북구보문 1 가 118	이 성 훈	무단폐지	지정취소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88 호

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0 조 제 1
항에 의거 특정열 사용기자재 시공

○ 취소업체명

지정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
28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
다.

1983.12.13

서울특별시장

지정번호	업 체 명	대 표 자	소 지 지	의 발 기 동
중구 8	대원정수설비	손 필 모	중구만리동 1가 62-10	무단장소이전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89 호

도시계획사업 (하천) 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79호 (81.7.27)로 도시계획시설 (하천) 결정 및 지적고시된 구로구개봉 3동 314-2구로구천왕동 74번지간 개화천 제방축조공사 구간내에 저축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공고함.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토목과에 비치하고 있으며,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.

1983.12.16

서울특별시장

공 랑 개 고

1. 사업시행위치 : 구로구개봉 3동 314-2 구로구천왕동 74번지
2. 사업의 종류 및 일량 : 도시계획사업 (하천) 개화천 제방축조공사
3. 사업의 규모 : 제방축조 길이 1,640m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구로구청장)
5. 사업의 항구 및 준공예정일 : 인가일 - 1984. 9.30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: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
7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

첨부 : 토지 및 건물조서 1부

토 지 조 서									
번 호	소 계 지		지 녹	지 적 (㎡)	편 입 면 적 (㎡)	실 제 이용 상	소 유 자		비 고
	동 명	지 번					주 소	성 명	
1	천왕동	1-43	대	179	179		천왕동 1-43	김 칠 현	
2	"	1-44	"	139	139		종로구적선동 78	최 병 기	
3	"	1-45	"	182	182		성동구성수동 2가 36-120	유 명 자	
4	"	1-46	"	155	155		"	"	
5	"	1-47	"	128	128		영등포구문래동 1가 71	박 호 천	
6	"	1-48	"	126	126		서대문구충정로 3가 187	강 재 언	
7	"	1-49	"	155	155		도봉구미아동 681-15	송 대 형	
8	"	1-50	"	165	165		"	"	
9	"	1-51	"	99	99		서대문구대조동 92	국인현외 1	
10	"	1-52	"	86	86		"	"	
11	"	1-53	"	142	142		도봉구미아동 081-15	송 대 형	
12	"	1-54	"	129	129		"	"	
13	"	1-55	"	136	136		"	"	
14	"	1-56	"	142	142		"	"	
15	"	1-57	"	152	152		"	"	
16	"	1-58	"	142	142		"	"	
17	"	1-59	"	142	142		종로구창신동 647-6	유 복 등	
18	"	1-60	"	149	149		"	"	
19	"	1-61	"	149	149		"	"	
20	"	1-62	"	162	162		서대문구대조동 92-9	국 인 현	
21	"	1-145	"	142	142		수원시세류동 324-7	홍 기 유	
22	"	1-146	"	132	132		강남구청담동 7-2	홍 사 유	
23	"	1-147	"	135	135		"	"	
24	"	1-148	"	137	137		"	"	
25	"	1-120	"	107	107		"	"	
26	"	1-151	"	146	146		서대문구대조동 92-9	국 인 현	
27	"	1-152	"	101	101		"	"	

번 호	소재지		지목	지적 (㎡)	면적 (㎡)	실제 이용 상	소유자		비고
	동명	지번					주소	성명	
28	천왕동	1-153	대	142	142		천왕동 1-137	김영석	
29	"	1-69	"	27	27		강남구청담동 7-2	홍사유	
30	"	1-68	"	20	20		"	"	
31	"	1-67	"	17	17		"	"	
32	"	1-162	"	19	19		성동구성수2가 36-421	홍사유의1	
33	"	1-149	"	1	1		강남구청담동 7-2	홍사유	
34	"	1-161	"	16	16		관악구신림동 402-50	이래승	
35	"	1-150	"	28	28		"	"	
36	"	1-64	"	13	13		서대문구대조동 92-9	국인현	
37	"	1-63	"	11	11		"	"	
38	"	1-137	"	24	24		천왕동 1-137	김영석	
39	"	1-154	"	16	16		" 1-136	김삼홍	
40	"	1-163	"	3	3		동작구신대방동 694-3	임판수	
41	"	1-164	"	14	14		광명시광명동 276-22	조길	
42	"	1-159	"	2,546	2,546		강서구화곡동 102-90	이상기	
43	"	3-5	답	247	247		개봉동 155-2	이전우	
44	"	3-6	"	681	681		" 162	이성우	
45	"	3-7	"	913	913		"	"	
46	"	52-1	잡	5,051	5,051		시흥군서면광명리 174	안종한	
47	"	51-1	"	13	13		오류동 185	장지남외2	
48	"	53-1	전	363	363		동대문구용두동 712	김종호	
49	"	55	"	1,076	1,076		" " 253-187	유승호외1	
50	"	56-1	"	869	869		관악구봉천동 466-2	안홍수외4	
51	"	57	"	1,755	1,755		개봉동개봉 APT17동1020	유근철	
52	"	62-1	잡	2,664	2,664		용산구용산동 5가 19-62	김영하외3	
53	"	61-1	전	63	63		구로구천왕동 210	김득용외1	
54	"	63-1	답	74	74		마포구공덕동 252-7	오준근	
55	"	64-3	전	382	382		서대문구충정로3가 3-5	노원태	
56	"	65-3	"	423	423		동작구노량진동 125-17	강용원	

번 호	소재지		지목	지적 (㎡)	면적 (㎡)	실제 이용 상황	소유자		비고
	동명	지번					주소	성명	
57	천왕동	66-3	전	623	623		영등포구영등포동28-97	김문숙	
58	"	69-7	"	440	440		시흥군서면광명리 211	강대웅	
59	"	67-1	잡	1,313	1,313		구로구오류동 214-3	김장영	
60	"	69-9	전	730	730		중구신당동 353-65	안용대	
61	"	69-8	임	630	630		구로구오류동 214-3	김장영	
62	"	68-1	잡	817	817		동대문구용두동 102-179	고신원	
63	"	69-10	전	1,190	1,190		구로구천왕동 12-12	김학재	
64	"	70-4	"	676	676		시흥군서면광명리 158-87	오장근	
65	"	71-9	잡	44	44		오류동 214-3	김장영	
66	"	71-1	"	301	301		강동구진동 647-2	유수자	
67	"	70-5	전	467	467		천왕동 12-12	박소진	
68	"	70-6	"	11	11		마포구동교동 118-1	이재성	
69	"	71-5	잡	1,026	1,026		구로구오류동 214-3	김장영	
70	"	71-7	"	158	158		"	"	
71	"	72-1	"	574	574		"	"	
72	"	73-3	답	521	521		구로구개봉동 249-31	서재희외 1	
73	"	74-3	잡	2,005	2,005		은평구응암동 328-8	최승철	
74	"	74-5	답	2,197	2,197		성동구중곡동 34-27	홍연일	
75	"	75-1	잡	39	39		마포구아현동 85-19	김경옥외 1	

건물조서

번 호	소재지		건물의 종류	구조 및 구적	면적 (수량)	실제 이용 상황	소유자		비고
	동명	지번					주소	성명	
1	천왕동	1-44	주택	연와조	63.24	주거	천왕동 1-44	최병기	
2	"	1-47	"	평옥개 연와조 세멘벽돌조	150.28	"	영등포구문래동 1-71	박호천	
3	"	1-137	"	평옥개 연와조 세멘와즙	128.93	"	천왕동 1-137	김영섭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90 호

도 시 계 획 안 공 고

1. 도시계획법 제 1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의 2 규정에 의거 강남구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 장소에서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.
2. 당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

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람기간 : 83.12.17 ~ 1983. 12 .30

나. 공람장소 : 강남구철 도시정비과

1983. 12. 15.

서 울 특 별 시 장

구 분	도시계획안	위 치	규 모	비 고
도시계획시설	학 교	강남구방배동산81-5일대	당초 17,250㎡ 변경 25,017㎡	(중) 7,767㎡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91 호

도시공원 시설 (정구장) 관리위탁공고

1. 도시공원시설 (정구장) 을 도시공원법 제 6조 제 2 항에 의거 관리위탁하였기 동법 제 6조 제 3 항에 의거 이를 공고 한다.

1983. 12 .15

서 울 특 별 시 장

가. 위치 : 동대문구 장안동 356 번지 장안평 근린공원내

가. 위탁종류 및 명칭 : 도시공원시설 (정구장) 관리위탁

다. 수탁자 : 동대문구상봉동 127-39 번지 김 응 환

라. 위탁기간 : 84.1.1-84.12.31

마. 위탁사항 : 테니스코트 1 면 , 연습장 1 면 , 면적 954㎡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93 호

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643 호 (83. 11.29) 및 동고시 제 661 호

(83.12.9) 로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된 영등포구 문래동 2 가 40-6 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에 의거 공람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3. 12 .16

서울특별시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서울시영등포구 문래동 2 가 40-6

나. 사업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문래시장 신축공사

다. 사업규모 : 대지 1,596.7 ㎡ 지하 1 층 , 지상 3 층

건축면적 : 783.6 ㎡

연면적 : 3,382.24 ㎡

라. 사업시행자 : 문래동 2 가 40-6 영문실업 (주) 대표이사 이 은 두

마. 사업예정기간 : 1984.1 - 1984.6

바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 일간

사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(생략)

아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(생략)

자. 기타 자세한 것은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(634-6664) 에 문의 바람.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94 호

도시계획사업 (시장) 변경시행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06 호 (82.

8.6) 로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된 영등포구 신길동 259-4 의 5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(시장) 변경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3. 12. 16.

서울특별시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영등포구 신길동 259-4 의 5 필지

나. 사업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신동시장 현대화 신축공사

다. 사업시행자 : 서울시 영등포구신길동 259-4 신동시장 (주)

<p>대표이사 피 정 환</p> <p>라. 사업규모</p> <p>1) 당초: 지하 1층, 지상 2층, 대지: 937㎡, 건축면적: 463.60㎡, 연면적: 1,438.14㎡</p> <p>2) 변경: 지하 1층, 지상 3층 건축면적: 463.60㎡, 연면적: 1,901.84㎡</p> <p>마. 사업기간</p> <p>1) 당초: 1982.8.19-1983.2.18. 2) 변경: 1984.6.1-1984.11.1</p> <p>바. 공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</p> <p>사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, 지번 및 지목과 소 유권이의 권리명세(생략)</p> <p>아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항에 규정한 관계인의 주 소, 성명(생략)</p> <p>자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청도정비과(634-666)로 문의 바람.</p>	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695 호</p> <p>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</p> <p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3조의 2.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동규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합니다.</p> <p>1983. 12. 17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다 음</p> <p>1. 지정구역: 서울특별시 강관구 가 락동 142-1 외 88 필지</p> <p>2. 면적: 29,355.3㎡</p> <p>3. 아파트명: 가락동 다성아파트</p> <p>4. 규모: 아파트 14층 2동 140세대</p> <p>5. 사업주체: 줘라이프 대표 조내혁</p>		
<p>사 령</p>			
<p>© 1984년 1월 1일자 령제 443 호</p>			
<p>성명</p> <p>황광식</p> <p>권중연</p>	<p>발령사항</p> <p>지하철건설본부 파견근무를 명함. (84.1.1 - 84.5.30)</p>	<p>현부서</p> <p>상공과</p> <p>지하철운영사업소</p>	<p>직급</p> <p>지방전기기사보</p> <p>지방전기기사보</p>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최재광	지하철건설본부 파견근무를 명함. (84.1.1-84.5.30)	영등포구	지방전기지원
이해량	"	용산구	"
김만수	"	수원기전과	"
이재석	"	종합종말처리사업소	지방전기지원보
송재승	"	팔당수원지사업소	"
박수철	"	지하철운영사업소	지방통신기사
박영석	"	서대문구	지방건축지원보
최진복	"	강남구	지방건축지원보

◎ 1983년 12월 13일자

령제 444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신효순	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	통계전산담당관	지방별정직 9급상당

◎ 1983년 12월 14일자

령제 445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김철회	'84.1.31 까지 총무과 기동근무를 명함.	종합건설본부	지방건축기사보
설재풍	" 만남의 광장 " 운영요원 기동근무를 명함.	마포구	지방전기장 (기능직 7등급)

◎ 1983년 12월 5일자 령제 446호

내무국 이홍열
지방행정주사

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.
(83.12.15-84.12.4)

◎ 1983년 12월 17일자 령제 447호

용산구산업과 정옥용
행정서기

지방행정서기에 임함.
용산구 근무를 명함.

<p>마포구산업과 행정서기 민 병 설</p> <p>지방행정서기에 임함. 마포구 근무를 명함.</p> <p>강서구신월 4 동 행정서기 김 기 두</p> <p>지방행정서기에 임함. 강서구 근무를 명함.</p> <p>강서구산업과 지방행정서기 채 희 택</p> <p>행정서기에 임함. 강서구 근무를 명함</p>	<p>강동구건설관리과 행정서기 신 용 식</p> <p>지방행정서기에 임함. 강동구 근무를 명함.</p> <p>강동구산업과 지방행정서기 박 인 범</p> <p>행정서기에 임함. 강동구 근무를 명함.</p>
Empty space for additional information	